

제 850 호
1981. 8. 1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편집 : 문화공보관 김 진 호
전화 72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2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	례	
제 1526 호 (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) :	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 조례중개정조례	3
제 1527 호 (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) :	서울특별시도서관사용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	5
◎ 규	칙	
제 240 호 (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) :	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 임시직의사규칙중개정규칙	5
제 241 호 (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) :	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 분장규칙중개정규칙	6
◎ 고	시	
제 276 호 :	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결정및지적승인	7

〈이면계속〉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1708

제 278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8
제 279 호 :	도시계획시설 (하천) 결정및지적승인	8
제 280 호 :	도시계획시설 (유류업무설비) 실효	9
제 282 호 :	도시계획시설 (시의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) 결정및변경 과지적승인	10
제 283 호 :	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기간정점	10
제 284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11
제 285 호 :	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기간변경	11
제 286 호 :	도시계획시설 (수도) 변경결정및지적승인	12
제 287 호 :	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결정	12
제 288 호 :	육류연동가적및육류기준연동표	14

◎ 공 고

제 200 호 :	도시계획사업 (수도) 실시계획인가물위함공람공고	15
제 201 호 :	제 7 회서울발전상사진작품모집	16
제 202 호 :	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완료공고	17
제 203 호 :	KS 표시정지처분공고	17
제 204 호 :	분묘이장공고	18
제 205 호 :	동청사위치변경공고	19
제 206 호 :	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	19

◎ 사 명

조 례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'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'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7월 29일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 장갑

○서울특별시조례제 1526호

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
설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'시청각교제'를 '교육자모'로 하고 '현장지도로서'를 '현장지도로서'로 하며 '기여한다.'를 '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'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원장) ①교육연구원에는 원장을 두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4조(하부조직) ①교육연구원에 서무과, 교육과정연구부, 교원연수부, 교육사료부, 생활지도상담부, 과학기

술 교육연구부를 둔다.

②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.

제5조(서무과) ①서무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계, 경리계를 두되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②서무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일반서무 및 관인관수
2. 문서수발, 통제 및 보관
3. 민원 및 보안에 관한 사항
4. 인사·복무·연금
5.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한 사항
6.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7. 기타 원내 다른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③경리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세입·세출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2. 물품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
3. 급여 및 제 지출금에 관한 사항
4. 세입·세출의 현금출납 보관
5. 계약에 관한 사항
6. 기타 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제6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교육과정연구부) ①교육과정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교육의 기획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

<p>2. 교과과정 연구에 관한 사항</p> <p>3. 연구학교 및 연구교사 지도에 관한 사항</p> <p>4. 교육평가 연구에 관한 사항</p> <p>5. 유아·특수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</p> <p>6.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연구 업무에 관한 사항</p> <p>② 제 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연구부에 조사연구실, 교과과정연구실, 특별활동과정연구실, 교육평가연구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.</p> <p>제 7 조 (교원연수부) ① 교원연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초등학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</p> <p>2. 중등학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</p> <p>3. 교원연수 교재편성에 관한 사항</p> <p>4. 연수대장 정리 및 연수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</p> <p>② 제 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연수부에 초등학교원연수실, 중등학교원 연수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.</p> <p>제 8 조 (교육자료부) ① 교육자료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</p> <p>2. 시청각 교재의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3. 시청각 교육자료 연구에 관한 사항</p>	<p>4. 교육도서의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5. 학교 도서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</p> <p>② 제 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자료부에 교육자료개발실, 도서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.</p> <p>제 9 조 (생활지도상담부) ① 생활지도상담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학생 생활지도 연구에 관한 사항</p> <p>2. 학생진로지도 및 취업 상담 연구에 관한 사항</p> <p>3. 학생교육상담 연구에 관한 사항</p> <p>4. 학생심리측정 연구에 관한 사항</p> <p>② 제 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지도상담부에 생활지도연구실, 교육상담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.</p> <p>제 10 조 (과학기술교육연구부) ① 과학기술교육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기초과학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지도에 관한 사항</p> <p>2. 실업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지도에 관한 사항</p> <p>3. 정신교육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</p> <p>4. 교육기재의 선정·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5. 교육기재의 조작·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</p> <p>6. 기타 과학·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</p>
---	---

② 제 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교육연구부에 과학교육 연구실, 기술교육연구실, 전산실은 두의 실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.
 제 11 조 (정원) 교육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.
 제 13 조 (위임사항)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 제 14 조 중 '또는'을 '및'으로 한다.

부 칙
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'서울특별시립 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' 중 개정조례'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8월 1일
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창 갑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527호
 서울특별시립 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
 서울특별시립 도서관 사용료 징수조

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 1 조 제 1 항 중 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 1. 보통사용료 1회 100 원
 2. 특별연구실 사용료 1인 1일 500원
 부 칙
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임시직 의사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 1981. 7. 20.
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창 갑 인

◎교육규칙 제 240호
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임시직 의사규칙 중 개정규칙
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임시직 의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 4 조 '별표 1' 및 '별표 2'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1. 일반의사 및 전문의의 월급로액					
구 분	1호봉	2호봉	3호봉	4호봉	5호봉
일반의사	224,000	236,000	247,000	259,000	271,000
전문의	276,000	288,000	299,000	311,000	322,000

별표 2. 일반의사 및 전문의 월실적수당 지급기준		
구 분	정상근무시간진료	비 고
일반의사	300,000	
전문의	500,000	

부 칙 (81.7.20)

이 규칙은 198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p>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무분장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1년 7월 27일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 장 갑 團</p> <p>◎교육규칙제 241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</p> <p>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 제2항중 "(3급을류상당)"을 "(5급상당)"으로 한다.</p> <p>제4조중 "장학제, 인사제"를 "장학담당장학관, 인사담당장학관"으로 하고</p>	<p>"장학제장, 인사제장"을 "장학담당장학관, 인사담당장학관"으로 한다.</p> <p>제5조 중 "장학제, 인사제, 생활지도"를 "장학담당장학관, 인사담당장학관, 생활지도담당장학관"으로 하고, "장학제장, 인사제장, 생활지도제장"을 "장학담당장학관, 인사담당장학관, 생활지도담당장학관"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중 "실업교육제, 공업교육제"를 "실업교육담당장학관, 공업교육담당장학관"으로 하고, "실업교육제장, 공업교육제장"을 "실업교육담당장학관, 공업교육담당장학관"으로 한다.</p> <p>제7조 중 "장학제"를 "장학담당장학관"으로 하고, "장학제장"을 "장학담당장학관"으로 한다.</p>
---	--

제 8 조중 "체육제"를 "체육담당장학관"으로 하고, "체육제장"을 "체육담당장학관"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은 시행 당시의 장학제장, 인사제장(서무과 인사제장은 제외한다.) 생활지도제장, 실업교육제장, 공업교육제장, 체육제장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각각 장학담당장학관, 인사담당장학관, 생활지도담당장학관, 실업교육담당장학관, 공업교육담당장학관, 체육담당장학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규칙시행 당시의 장학제, 인사제, 생활지도제, 실업교육제, 공업교육제, 체육제소속 장학사는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각각 장학담당장학관, 인사담당장학관, 생활지도담당장학관, 실업교육담당장학관

관, 공업교육담당장학관, 체육담당장학관 소속하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고 시

○ 서울특별시고.시제 276 호

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결정 및 지적 승인

- 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463 호(79.12.10)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전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의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7. 25

서울특별시 장

○ 고속철도(부대시설)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	비고
신설	차고	도봉구상계동 821 번지일대	A = 181,020 ㎡	

○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78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2 호(80.1.25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성북구 정능동산 17-6 의 1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하고
- 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7. 27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정능동산 17-6 의 1 필지
- 나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)
명칭 : 운동장시설(중학교용)
- 다. 사업의규모 : 총사업 시행면적
38,742 ㎡
운동장 시설면적
5,387 ㎡ (1,629 평)

- 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
성북구정능동산 16-1
학교법인 성한학원이사장 김영순
- 마. 사업의착수및 준공년월일
가)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15 일 이내
나) 준공년월일 : 81.11.30
- 바. 위치및 계획경면도 : 별첨(도면생략)
*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79 호

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및지적승인

- 1. 당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(하천)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과 경기도 지역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7.27

서울특별시장

구분	하천명	내용	기점	종점	비고
신설	개화천	B = 60-80 m L = 3,200 m	구로구청왕동	구로구 개봉동 안양천합류점	경기도는 목감천입
○ 별첨 도면표지와 같음(도면생략)					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80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유용업무설비) 실효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유용업무설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에 의한 2년 이내에 지적승인이 되지 않아 도시계획 실효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4 조 및 건설부고시 제</p> <p>○ 시설조서</p>	<p>463 호 (79.12.10)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 7. 27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-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실효	유용업무설비	강남구서초동산 120-3 일대	64,200 ㎡	

○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		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81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화물자동차정류장) 결정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화물자동차정류장)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의 권한위임사항에 따</p> <p>○ 시설조서</p>	<p>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 7. 27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			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실효	화물자동차정류장	강남구서초동산 120-3 일대	48,780 ㎡ (14,756평)	

○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82 호

도시계획시설(시의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) 결정및변경과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시의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)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 권한위임 사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7. 27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주소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시의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	둔대문구상봉동 83-1 일대	36,364 ㎡	
기정		은평구대조동 2-30 일대	2,263 ㎡	
변경			7,920 ㎡	

○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83 호

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설비) 시행기간 정정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53 호(81.7.4)로 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기간 표시 착오가 있어 정정하였기 도시계획법

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도시계획 2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7. 28

서울특별시장

○ 정정내용

당초시행기간	정정시행기간
착공예정일 : 30.11.7 준공예정일 : 82.3.31	사업시행기간 : 00.11.7-82.3.31
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284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</p> <p>1. 건설부고시제 318 호 (73.8.1) 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 137 호 (73.8.14)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을 허가하고 이를</p> <p>다. 사업의 규모</p>	<p>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7.2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p>가. 사업의 시행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220-3 호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○ 명칭 :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용도</th> <th>구분</th> <th>증축연면적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증축</td> <td>도서실</td> <td rowspan="2">철근콘크리트라멘조</td> <td>136.97 평방미터</td> </tr> <tr> <td>기술실</td> <td>126.09</td> </tr> </table>	구분	용도	구분	증축연면적	증축	도서실	철근콘크리트라멘조	136.97 평방미터	기술실	126.09	
구분	용도	구분	증축연면적								
증축	도서실	철근콘크리트라멘조	136.97 평방미터								
	기술실		126.09								
<p>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</p> <p>주소 : 서울특별시성동구모진동 93-1</p> <p>성명 : 학교법인건국대학원이사장유승운</p> <p>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착수 : '81.7.27 ○ 준공 : '82.7.31 <p>바.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정면도 및 공사설계도면 : 생략</p>	<p>도 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4 조의 건설부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서류는 서울시청도시계획 2 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										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285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변경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제 407 호 (79.9.17)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7.29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										

○ 변경내용

당 초 시 행 기 간	변 경 시 행 기 간
착수년월일: 허가일부터 일주일 이내 준공년월일: 1980.7.31	사업시행기간: 79.9.17-81.7.31

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286 호

도시계획시설 (수도) 변경
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수도)
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
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
동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

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
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도시정비과와
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
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7.29

서울특별시 장

○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기정	수 도	성동구구의동 160-1 부근	202,987 ㎡	
변경	·	·	204,359 ㎡	증 1,372 ㎡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287 호

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결정

1. 당시 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에
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
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의
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결정하였기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 2
과와 지하철 건설본부 및 관할구
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
유자 *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7.30

서울특별시 장

○ 고속철도결정조서: 별첨

지하철 3 호선시설결정조서 (정차장)							
순위	역명	위치	규모			비고	
			폭(m)	연장(m)	면적(㎡)		
1	구파발역	은평구진관내동 551-1	부근	17	206	3,600	
2	대조역	대조동 185-1		17.7		4,300	
3	불광역	불광동 281-171		21		4,700	
4	녹번역	응암동 16-9		18		4,400	
5	홍은역	서대문구홍제동 303-66		18		4,100	
6	홍제역	26-1		20		4,500	
7	독립문역	현저동 95-1		17		4,200	
8	중앙청역	종로구적선동 95-1		22		5,700	
9	안국역	안국동 112-3		20		4,700	
10	장충역	중구장충동 2가 189-2		20		5,200	
11	약수역	신당동 373-13		17		4,500	
12	금호역	성동구금호동 4가 1474-1		19		4,100	
13	옥수역	옥수동 369		17	205	4,000	
14	압구정역	상남구압구정동산 42-3		23	206	5,800	
15	신사역	신사동산 78-22		28		5,100	
16	잠원역	잠원동 93-17		20		4,200	
17	종합터미널역	반포동 162		21		5,800	
18	교대역	서초동 826-4		21		5,600	
19	서초역	684-12		18		4,900	
20	양재역	양재동 27-2		19		5,200	
지하철 4 호선시설결정조서 (정차장)							
순위	역명	위치	규모			비고	
			폭(m)	연장(m)	면적(㎡)		
1	상계역	도봉구상계동 172-75	부근	17	205	3,800	
2	상계 2 동역	335		16		4,500	
3	창동역	창동 74-2		17		3,500	
4	쌍문역	659-12		21	206	4,800	

순위	역 명	위	치	규 모			비 고
				폭 (m)	연장(m)	면적(㎡)	
5	수 유 역	도봉구수유동 446-14	부근	22	206	4,900	
6	미 아 역	• 미아동 197-14	•	22	•	5,100	
7	하 월 북 역	• • 71	•	22	•	5,200	
8	길 음 역	성북구길음동 877-66	•	20	•	5,900	
9	돈 압 역	• 동선동 4가1	•	22	•	6,300	
10	삼 선 교 역	• 삼선동 1가 14	•	18	•	4,300	
11	해 화 역	종로구병분동 4가 90	•	19	•	4,700	
12	종로 6 가 역	• 종로 6 가 64	•	24	•	5,600	
13	서울운동장역	강구울지로 7가 120	•	21	•	6,100	
14	서 울 역	용산구동자동 43-53	•	22	•	5,100	
15	갈 월 역	• 갈월동 69-44	•	23	•	5,000	
16	삼 각 지 역	• 한강로 1가 293	•	21	•	4,800	
17	용 산 역	• • 2가 181	•	21	•	4,600	
18	이 촌 역	• 용산동 5가 17-105	•	21	•	4,900	
19	동 작 역	동작구동작동 126-5	•	20	205	4,200	
20	이 수 역	사당동 9-31	•	21	206	4,800	
21	사 당 역	• 581-1	•	22	207	4,700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8 호

육류연동가격 및 육류기준연동표

육류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
부 훈령 제 453 호에 의거 서울특별시
의 육류연동가격 및 육류기준연동표

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1.7.31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1. 육류연동가격
돼지고기 (정육 600 g당) 1,900원

2. 유통 기준 연동표

구분	도매시장가격 (지육kg당)	연동가격 (정육600g당)	도매시장가격 (지육kg당)	연동가격 (정육600g당)
돼지고기	2,150 원	1,900 원	1,900 원	1,700 원
	2,100	1,900	1,850	1,650
	2,050	1,850	1,800	1,650
	2,000	1,800	1,750	1,600
	1,950	1,750	1,700	1,550

3. 시행일 : 1981. 8. 1부터

공 고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200 호

도시계획 사업(수도) 실시
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6 (81.6.29) 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된 구로구 시흥동에 위치한 시흥 통합 가압장 공사 구간내 편입된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(79.12.10) 호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공고함.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수도 2과에 비치하고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별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

음 함.

1981. 7. .

서울특별시장

공 랑 개 요

1. 사업시행지 : 구로구시흥동 247-19, 248-22, 산 86-8, 산 91-1, 102-5 각 일부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시흥 통합 가압장 시설공사
3. 사업규모 : 가압장 62.3 평
모터펌프 200HP x 2대, 40HP x 2대
배수지 1000㎡, 500㎡ 각 1지
송배수관 4,000 m
전기시설 1식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구로구청장)
5.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: 인가일-81.11.25
6. 수용토는사용할토지 : 별첨토지조서
7.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 토지조서
첨부 : 토지조서 1부

토 지 조 서						
번호	동 명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	구로구시흥동	247-19	대지	191㎡	구로구시흥 2동 247-3	김원백
2	"	248-22	"	78㎡	용산구이촌동 302-64	김택일
3	"	산 86-8	임야	59㎡	"	"
계				328㎡	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01 호

제 7 회 서울발전상 사진작품 모집

맑고, 밝고, 건강할 수도 서울의 발전상을 영구히 기록 보존할 우수한 사진작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1. 응모작품 내용

- 서울의 건설 및 도시정비 미화
- 시민복지 향상
- 사회정화운동 및 새마을운동
- 기타 시민생활 주변 및 시정

전반에 걸친 발전상

2. 작품의 종류 및 크기

칼라 및 흑백 사진 11'×14'이상 (필립규격 제한없으며 입상작에 한하여 원판제출)

3. 접수기간 : 81.10.16 ~ 10.24 (일요일제외)

4. 접수처 : 시정홍보관 (시청앞 지하철역 구내)

5. 입상작발표 : 81.10.30 (금)
(개별 통지 및 작업간신문, 방송에 보도)

6. 시상

구 분	시 상 내 용	작 품 수
금 상	상장 및 상금 50 만원	1 점
은 상	" " 각 30 만원	2 점
동 상	" " 각 20 만원	5 점
입 선	" " 각 2 만원	50 점

* 시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지 함.

7. 입상작품전시: 81.11.13 ~ 12.31 (시정홍보관)

8. 판 권 : 입상작품의 판권은 당시의 소유로 함.

9. 낙선작품의 반환 : 81.10.30-11.3
(위 기간내 찾아가지 않은 작품
은 당시에 귀속됨)

10. 기 타

가. 촬영대회 개최

○ 대회일시 : 81.9.13(일)

10:00 - 17:00

○ 대회장소 : 시 주요 건설사업
장 (코-스 추후결정)

○ 참가인원 : 250명 (선착순 접
수)

○ 참가신청 : 81.8.25(화)부터 서
울특별시 문화공보관실에서 신
청서 배부 및 접수

○ 참가자격 : 제한없음

나. 문의처 : 서울특별시 문화공보관
실 보도계

(주소 : 중구 태평로1가31.

전화 725-7614)

1981. 8. 1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02 호

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

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7 호 (77.5.

21)로 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

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
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
항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
12.10)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
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
인에게 보여지 한다.

1981. 7. 29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 시행처 : 서울특별시
성동구 광장동 산 81-14

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
(전기공급 설비)

다. 사업기간 : 79.9.16 - 81.

라. 사업규모 : 총부지면적 4,000평

마. 허가번호및일시 : 서울특별시
고시 제 157 호 (77.5.21)

바.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: 영등포구
여의도동 1-791

한국전력 주식회사사장 김영준

사. 준공도면 : 원침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03 호

KS표시정지처분공고

표준회

공업표준화법 제 21조의 규정에

의거 다음과 같이 K.S (한국공업 규격) 표시정자 처분하였기 동법시 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이	료 공고 한다. 1981. 7. . . . 서울특별시장
---	--

1. 허가번호	제 846 호	제 847 호
2. 허가일자	73.10.19	73.10.19
3. 제조업체명	중앙기계공업(주)	중앙기계공업(주)
4. 대표자	김 철 흥	김 철 흥
5. 소재지	구로구 구로동 616	과 동
6. 품 목	내연기관용피스톤링	자동차용 시린머라이어 (전식 코터나 제외)
7. 규격번호	KSB 6021	KSB 9302
8. 처분기간	공고일로부터 3개월	과 동
9. 처분사유	주의경고 미시정	과 동

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04 호</p> <p>분 묘 이 장 공 고</p> <p>서울특별시 고시 제 336 호 (78.5.20)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직업훈련원 부지에 매장된 분묘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 및 제 16 조 동법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장할 것을 공고하니 연고자는 기간내에 이장하지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이장치 않을 경우에는 임의 이장하겠음을 공고 한다.</p>	<p>다 음</p> <p>1. 분묘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암사동산 42-13, 산 42-14, 산 42-15, 산 42-16, 산 42-17, 명일동 산 12-3, 302, 산 11-1, 301, 산 13, 1-1, 산 27-1, 산 26, 1-3, 2-1, 2-3, 1-4, 산 30-1, 3-1, 3-2, 10, 5, 9-1, 6-1</p> <p>2. 이장기간 : 자 1981년 8월 31일 (10일간) 지 1981년 9월 9일 (공고기간에 이장하여도 가함)</p> <p>3.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사회과에 문의하시기 바란다.</p> <p>1981. 7. 31 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05 호</p> <p>동 청사위치 변경 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일부 동청사의 위치물</p> <p>○ 위치변경 내용</p>	<p>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공고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 7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-

동사무소명	년 경 내 용		변 경 일 자
	년 경 전	변 경 후	
신림 10 동	관악구 신림동산 85-56	관악구 신림동 310-8	81.8.3

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06 호</p> <p>KS 표시 정지처분 해제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고 제 117 호 (81.4.27) 로 KS 표시 정지처분한 바 있는 아래 업체에 대해 등 처분을 해제 하였기 공업 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준해 이를 공고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 7. 27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허가번호 제 1202 호</p> <p>2. 허가일자 1976.3.11</p> <p>3. 제조업체명 길전기업사</p> <p>4. 대표자 한상덕</p>	<p>5.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171</p> <p>6. 품 명 철근콘크리트 근가</p> <p>7. 규격번호 KSP 4020</p> <p>8. 해제일자 1981. 7. 27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사 령</p> </div> <p>◎ 1981. 7. 28 령제 267 호</p> <p>세무조사과 이철수</p> <p>지방행정사무관</p> <p>지하철건설본부 고전상</p> <p>지방전기과</p> <p>전시국가지도회의 근무요원에 임함 (81.9.10 ~ 81.9.19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-

◎ 1981. 7. 29 명제 268 호

지하철건설본부장 우 명 규
지방시설부기감

지방시설기감
지하철건설본부장

서울특별시장

◎ 1981. 8. 1 명제 272 호

은경구청무과 원 지 연
지방서기관

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 항
제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
(81.8.1-81.10.31 까지 내무국대기
근무를 명함)

서울특별시장

내 무 국 이 순 열
지방서기관

단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
서울특별시장